# 의안검토보고서

1. 발의 또는 제출자 : 대전광역시장

2. 건 명: 대전컨벤션센터 관리 · 운영에 관한

조례안

3. 안 건 요 지: 별 첨

4. 검 토 의 견: 별 첨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7년 9월 12일

행 정 자 치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희 배

# 대전컨벤션센터 관리 · 운영에 관한 조례안

본 조례 안은 2007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8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## 1. 제안이유

컨벤션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건립하는 대전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대전컨벤션센터의 사용허가와 사용료에 대하여 정함(안 제3조).
- 나. 대전컨벤션센터의 사용허가 제한에 대하여 정함(안 제4조).
- 다. 대전컨벤션센터를 국제회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.

### 3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 조례 안은

금년 12월 준공예정인 대전컨벤션센터의 시설사용료 및 위탁

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등 전반적인 관리·운영 규정을 마련 하려는 것임.

○ 먼저, 본문 제9조와 부칙으로 축조되어 있는 조례 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조례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서 목적과 센터의 위치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 조례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는 사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, 조례 안 6조 내지 제8조에서는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, 제9조에서는 시행 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#### ○ 본 조례 안 검토결과

대전컨벤션센터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「지방자치법」등에 근거하여 위탁관리 등을 규정한 본 조례의 제정은 법적 근거나 타당성 및 조례 안 축조 등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,

조례안 제3조제2항 관련 별표1에서 규정한 사용료에 있어 고정적인 시설사용료만을 정하고 있어, 그 외에 사용자가 가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, 집기 등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다만, 장비, 집기 등을 품목별로 조례에 규정할 경우 품목의

다양화와 변동요인의 빈번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조례 안에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.